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16
------	------

2016. 12. 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최호정의원외 10명(찬성의원 8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12.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호정 의원)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주관'을 지정·운영 하는 등 지방분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주관을 지정하는 등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정비해 지방분권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방분권 촉진 경과

-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각종 규제와 통제 속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지방분권특별법」, 「지방행정체

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활동을 펼쳐왔음.

- 이와 함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은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하기만 함.
-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추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계획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필요성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되면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분권추진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과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지난 2015년 4월 분권추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나 자치사무의 확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권과 관련한 권한이나 책임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전속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한계가 있음.

다. 지방분권협의회 운영개선(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 안 제9조는 지방분권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을 수정해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시는 지난 해 4월 근거 조례의 제정 이후 시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이후 2회의 자문회의와 전국토론회, 지방분권 토크쇼를 각 1회씩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참고자료).
- 다만, 지방분권 추진·지원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 등 시의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구인 협의회 특성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협의회 의사에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담당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지방분권 업무와 관련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협의회 활동의 시정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됨.

- 이 밖에 안 제9조의2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협의회 위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해촉 후 새로운 위원 선임을 통해 협의회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시가 설치·운영중인 많은 자문기구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고려할 때, 해촉근거 조항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곤란한 위원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협의회 활동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라. 주민자치주간의 지정·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현재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된 10월 29일을 전후한 7일간(10월 25일~10월 31일)을 '지방자치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2012년 개정을 통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과 지방자치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10월 29일을 전후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을 '주민자치주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시 자체적인 기념행사와 연구발표, 유공자 격려 등 지방분권 촉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행정자치부 중심의 기존 '지방자치의 날'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년 7일간 '주민자치주간'을 정하고 각종 부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본부·국장),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회 등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민자치주간 지정·운영 등) ①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등 범시민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실질적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u>시민단체</u>,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u>시민단체</u>, <u>관계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본부·국장)</u>,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3조(주민자치주간 지정·운영 등) ①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등 범시민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주간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실질적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